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정 2016.03.18, 법인인가일 2016.03.17)

제1조(목적) 본 대학은 학칙 제41조에 의한 서라벌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명칭) 이 과정은 학점은행제라 칭한다.

제3조(지원자격과 모집)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학점은행제 수강생으로 모집한다.

②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집 일정과 인원 등은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제4조(등록과 선발취소)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등록금 미납부자, 증빙서류 허위 기재자, 전염병 및 유전병 등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수업 및 휴업)

① 수업시간은 본 교육원의 강의 시간표에 의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4주 이상으로 한다.

③ 휴업은 정기휴업과 임시휴업으로 한다. 정기휴업일은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이며, 임시휴업일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이다.

제7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제8조(학점인정)

① 강의시간은 50분(실험·실습·실기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한다.

②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③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성적평가)

① 각 학위별, 과목별 출석, 평가, 수업 참여도 및 학업성취도, 과제물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② 학습자가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5에 의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제10조(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점은행제과정 입학자격에 따른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때
2.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

제11조(학위수여)

①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학점이 140학점 이상이고, 본교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본교 총장명의의 학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③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습자가 학위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4에 의하여 학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강의료 지급

학점은행제 강의료는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습비 반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별표2)

제 호

학 위 증 서

성명 :
생년월일 :
전공 : (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0 0 0 0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총 장 0 0 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서라벌 - 0000 - 0000

(별표3)

제　　호

학　위　증　서

성명 :
생년월일 :
전공 :　　(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0 0 0 0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총　장　0 0 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서라벌 - 0000 - 0000

(별표4)

제 호

학 위 증 명 서

성명 :

생년월일 :

전공 :

졸업년월일 :

학위증서번호 :

학위번호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라 벌 대 학 교 총 장

(별표5)

제 - 호

성 적 확 인 서

학번		생년월일		성명	

학기기수	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성적	등급	이수년월일	비고

기관이수 총 인정학점	

성적등급	A+ : 100~95	A : 94~90	B+ : 89~85	B : 84~80
	C+ : 79~75	C : 74~70	D+ : 69~65	D : 64~60
	F : 59~0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라벌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